

#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

제정 2018.10.23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37조제3항에 의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본 규정은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규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합의 모든 선거에 적용한다.

**제3조(선거권)** 선거권은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7조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그 권한이 있다.

**제4조(피선거권)** 피선거권은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만1년 이상 계속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있다. 단 후원조합원은 규약 제7조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위원장의 입후보형태)** ①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선거에 있어 입후보 형태는 위원장, 사무총장 2인의 런닝메이트제로 한다.

② 런닝메이트 2인 중 위원장 궐위 시 보궐선거를 한다. 이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.

③ 수석부위원장, 사무총장 중 수석부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 중에서, 사무총장의 궐위 시 조합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한다.

## 제2장 선거관리

###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

**제6조(구성 및 자격제한)**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 및 운동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.

**제7조(기능)**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입후보자의 공고, 접수, 자격심사, 등록공고
2.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인

3. 선거공보 발행
4.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
5. 투·개표의 관리
6. 선거록 작성 및 보고
7.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

**제8조(의결정족수)**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
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·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.

**제9조(재적조합원의 산정기준)** 본 규정에 의한 재적조합원 산정은 명부작성일 현재 조합비를 1월 이상 계속 납부하면서 재직 중인 조합원으로 한다.

**제10조(회의소집 및 후보자등록절차 공고)**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, 선거 사무에 필요한 제반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마감 일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.  
② 선거관련 제반공고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군청 전자결재게시판에 게재한다.  
③ 선거일은 선거 1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**제11조(선거일)** ① 위원장 선거는 현 위원장의 임기만료 30일전에 실시한다.  
② 위원장의 보궐선거는 퀄리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. 다만, 위원장의 임기가 180일 미만일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
## 제2절 입후보

**제12조(입후보 자격)** 선거 입후보는 등록일 현재 만1년 이상 계속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.

**제13조(입후보 등록)** ① 위원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런닝메이트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.  
1. 입후보등록신청서 각 1부  
2. 조합원증명서 각 1부

3. 위원장 입후보 취지 및 공약사항 각 1부.

4. 입후보자 서약서 각 1부.

5. 후보자 이력서 각 1부.

6. 입후보자 추천서 각 1부.

② 입후보자가 임원 및 운영위원인 경우에는 입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자격이 정지된다.

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가 접수 즉시 심사를 실시하고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, 입후보자는 등록마감일까지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 한다.

**제14조(추천인)** 위원장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「별지 제4호 서식」의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 단, 중복추천은 무효로 한다.

**제15조(재등록 공고)** 위원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자격심사)**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.

**제17조(입후보자의 공고)**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를 거쳐 즉시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하며, 자격상실, 사퇴 등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
### 제3절 선거운동

**제18조(선거운동)**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 집행을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 할 수 있다.

**제19조(선거운동 기간)**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.

**제19조(선거운동 제한)**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1. 폭력, 공갈, 납치

2. 중상모략, 인신공격, 흑색선전

3. 금품수수, 향응제공

4. 선거관리 방해

5. 기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제한하는 행위

**제20조(합동연설회)**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. 단,

- 부득이한 경우 홈페이지나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연설문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.
- ② 합동연설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행하되, 각 후보의 연설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.

#### 제4절 선거인명부

- 제20조(선거인명부)**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인 명부를 작성하고 열람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명부기재 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,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7일전까지 확정해야 한다.
- ③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교부신청 시 교부할 수 있다.

- 제21조(명부등록 요건)**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비를 1월 이상 납부하면서 재직 중인 조합원으로 한다.

#### 제5절 투표와 개표

- 제22조(투표방법 및 투표소)** ① 투표방법은 직접, 비밀,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서면투표 또는 개인용 휴대전화와 노동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.
- ② 전자투표의 경우 제23조와 제24조 등 서면 투표에 갈음하는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동 조항을 따른 것으로 본다.
- ③ 서면 투표 시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로 하되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출장소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면은 순회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.

- 제23조(투표용지)**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.
- ②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는 추첨을 통해 정한다.
- ③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다.
- ④ 전자투표로 투표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용지에 날인한 것으로 갈음 한다.

- 제24조(투표용지 교부)**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인명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 교부하여야 한다.

- 제25조(참관인)**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의 지명한 2명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·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.
- ② 참관인은 투·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 위원에게 이의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.

**제26조(개표)**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개표종사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종료 선언과 개표선언과 함께 개표한다.

**제27조(무효표)**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.

1.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2.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하여 확인이 불분명하게 기표된 투표지
3. 이중으로 기표된 것
4.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
5. 백지 투표지
6.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지
7.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
8.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

**제28조(개표록)**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포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개표록에는 총유권자수, 투표인수, 기권자수, 후보자별 득표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진행사항 및 특이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, 개표록에는 선거관리위원 3분의 2이상이 공동으로 서명, 날인하여야 한다.

**제29조(당선결정)** ① 위원장의 선거는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조합원 과반수이상 투표참석과 투표참석자의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
② 단독 입후보한 경우에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, 투표조합원 과반수이상 찬성득표로 당선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 결과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, 최고득표자 순으로 2인을 선정하고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다.

**제30조(당선 공고)**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당선요건 확인 후 당선증을 교부하고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31조(재선거)**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.

1.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
  2.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가 된 때
-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확정하였을 경우 30일 이내 재선거를 실시하

여야 한다.

## 제6절 이의신청

**제32조(이의제기)**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이 이의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,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검토,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7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33조(부정선거 처리)**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규약 및 본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회의결과 부정선거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선거무효
2. 당선무효
3. 경고처분

**제34조(입후보자 자격상실)**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명백한 부정선거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된 자는 차기 선거의 입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.

**제35조(징계)**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의로 부정한 선거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)** 본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준용규정)**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입후보자간 이행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3조(기록보관)**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하에 예천군공무원 노동조합에 인계하여 보관한다.

**제4조(초대위원장 선거)** 초대위원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선거관리규칙을 따른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**입후보 등록신청서**

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 대 예천군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입후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- 다 음 -

구 분	위원장	사무총장	비 고
성명(한자)			
생년월일			
소 속			
직 급			

※ 첨부서류 : 선거관리규정 제12조 등록서류 일체

년 월 일

제 대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 
위원장 후보 (인)

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 
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

[별지 제1-1호 서식]

## **위원장 입후보 취지 및 공약사항**

제 대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후보자 등록에 따른 입후보 취지 및 공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- 다 음 -

소 속	직	성 명	생년월일	서명	비고
위원장 입후보 취지내용 (요약)					
공 약 사 항 (요약)					

년 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 일

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 
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

[별지 제1-2호 서식]

## 입후보자 서약서

1. 우리는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선거 후보자로서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의 위상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한다.
2. 우리는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및 선관위 결정사항을 엄수하여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체의 부정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며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실천한다.
3. 우리는 선거관리규정 및 선관위에서 정한 아래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, 2차 후보자격 박탈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한다.

- 아 래 -

- 1) 선거홍보물,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후보를 중상 모략하는 행위
- 2) 후보 개인 홈페이지 · 트위터 · 카페 등에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타인에 의해 게시된 글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
- 3)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
- 4)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행위

년 월 일

위 원 장 후보 인  
사무총장 후보 인

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 
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## 조합원증명서

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7조 및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 
다음의 자를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증명합니다.

구 분	대 상 자	비 고
성 명		
생년월일		
소속및직급		
가입년월일		

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(인)

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 
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

[별지 제3호 서식]

## 후보자이력서

### [별지 제4호 서식]

# 입후보추천서

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자를 제 대 예천군  
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.

## - 다 음 -

직위	성명	생년월일	직급	소속	비고
위원장					

추천자명단

년 월 일

#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